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2023년 1월 9일 사단법인 대한택견회(이하 '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감사하였으며,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시사의 방법에 의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상기 결산서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기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법인의 정관 및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관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으로 법인의 업무 및 회계처리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예산 초과 지출과 예비비 사용

법인은 2022년 예산수립 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항목으로 974,548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세출 항목 '예산회계프로그램사용료'로 72만원의 예산을 설정하였으나 설정한 예산 금액을 초과한 79만원을 실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수립 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용료 인상으로 발생한 지출 증가액이며, 이러한 경우 예비비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별도 항목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산 절차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사전에 예비비 사용 및 승인 절차에 대해 규정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2. 추가경정예산

법인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정관 제46조).

따라서, 수립한 예산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9일

감사 
최 호 윤